

의안번호	제858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8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변종오,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차원의 마약 중독 치료와 검사가 활성화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다.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식의약안전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
2.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

3.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 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 민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 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u>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u> 2. <u>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u> 3. <u>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u>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 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 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 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u><신 설></u> <u>5. (생 략)</u> ② (생 략)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성별</u> ----- <u>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 업</u> <u>6. (현행 제5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

3. 관련조문

- 안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2029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예방계획의 수립 : 자체수립
 - 자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발생 無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既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보 조 율 : 국비 50%, 도비 50%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既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명확한 사업 부재 및 지원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추계 곤란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 既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나. 추계 결과 : 285,000천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40,000천원 × 5년 = 200,000천원
-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홍보 : 2,000천원 × 5년 = 10,000천원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 10,000천원 × 5년 = 50,000천원
- 마약류 익명검사 : 5,000천원 × 5년 = 2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국비 50%, 도비 50%
-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홍보 : 도비 100%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 도비 100%
- 마약류 익명검사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불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285,000
마약류 중독자치료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마약류 근절홍보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마약류 예방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마약류 익명검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285,000
의존 재원	소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보조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185,000
	지방세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185,000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	-	-	-	-